

제3차 「고용정책조정회의」
2011년 5월 20일(금)

고용정책조정회의 자료

2011. 5. 20.

관계부처 합동

차 례

Ⅰ 안건 1: 최근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	1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Ⅰ 안건 2: 일자리 현장 애로 및 지원방안	9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「일자리 현장 활동」 추진상황 -

【 안건 1 】

최근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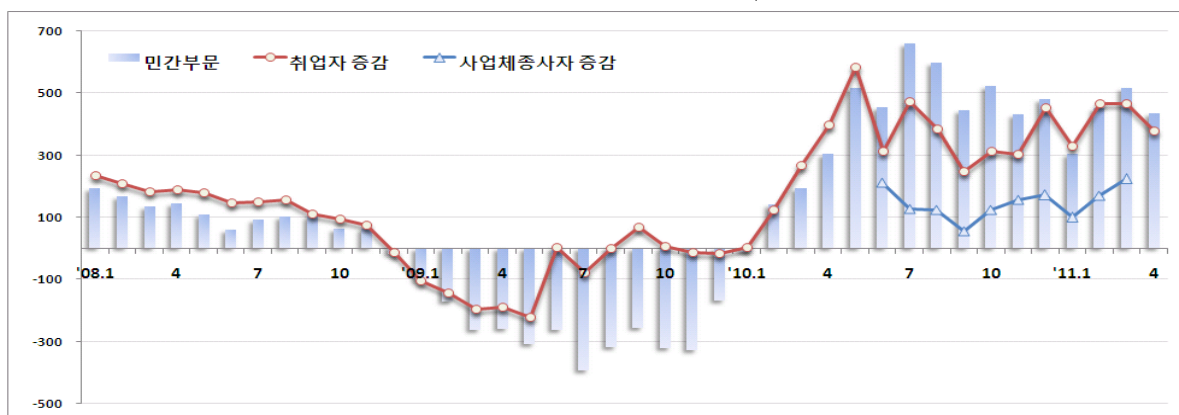
I. 고용동향 및 전망

- ❖ '11년 들어서도 지난 해에 이어 고용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년층의 어려움은 지속, 지역별 고용여건은 상이

□ 금융위기의 여파로 '08.11월 이후 감소하던 취업자수가 '10년부터 '11.4월 현재까지 16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

* 취업자 증감(천명): ('09) -72→('10) 323→('11.1) 331→(2) 469→(3) 469 →(4) 379

<취업자 및 사업체종사자 증감(천명, 전년동월대비)>



자료: 통계청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고용노동부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

□ 경기회복 및 수출호조에 힘입어 제조업과 민간서비스업, 상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지속적으로 개선

- 산업별로는 '05년부터 감소세를 지속하던 제조업 취업자가 '10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

* 제조업 취업자 증감(천명): ('09) -126→('10) 191→('11.1) 224→(2) 262 →(3) 198→(4) 116

- 서비스업은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, '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'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

* 민간서비스업 취업자 증감(천명): ('09) -7→('10) 254→('11.1) 168→(2) 210 →(3) 294 →(4) 364

- 연령별로는 인구구조변화 등으로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세 지속, 반면, 50세 이상은 증가세 지속

* 청년 취업자 증감(천명): ('09) -127→('10) -42→('11.1) -71→(2) -37→(3) -38→(4) -73

* 50세 이상 취업자 증감(천명): ('09) 252→('10) 341→('11.1) 349→(2) 455 →(3) 481→(4) 430

-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 증가, 감소세가 지속되던 비임금근로자는 2개월 연속 증가

* 상용직 증감(천명): ('09) 395→('10) 697→('11.1) 593→(2) 604→(3) 617 →(4) 607

* 비임금근로자 증감(천명): ('09) -319→('10) -194→('11.1) -204→(2) -105→(3) 50→(4) 16

- 반면 임시·일용직은 최근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모습

* 임시일용직 증감(천명): ('09) -136→('10) -189→('11.1) -58→(2) -30→(3) -168→(4) -243

- 기업(사업체) 규모별로는 전반적인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300인 이상 기업(사업체)도 증가세가 지속

<기업(사업체) 규모별 고용변동(천명, %, 전년동월대비)>

			'08.4	'09.4	'10.4	'11.4
기업	고용보험DB (상용+임시)	300인 미만	6,156(6.4)	6,334(2.9)	6,685(5.5)	7,013(4.9)
		300인 이상	3,007(3.7)	3,121(3.8)	3,286(5.3)	3,471(5.6)
사업체	사업체노동력조사 (상용+임시+일용)	300인 미만	-	-	11,392	11,545(1.3)
		300인 이상	-	-	2,255	2,326(3.1)

주1: 단, 사업체노동력조사(사업체)는 각 년도 3월 기준임

주2: 통상 하나의 기업은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개의 사업체(예: 본사, 지사, 공장 등)로 구성됨

자료: 고용노동부 「고용보험DB」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

- 전반적인 고용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- 고용률과 실업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미회복

* 고용률(15세 이상, %): ('08.4) 60.0→('09.4) 58.8→('10.4) 59.1→('11.4) 59.3

* 고용률(15~64세, %): ('08.4) 64.2→('09.4) 63.1→('10.4) 63.5→('11.4) 63.9

* 실업률(%): ('08.4) 3.2→('09.4) 3.8→('10.4) 3.8→('11.4) 3.7

- 빈 일자리 수도 '10.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

* 빈 일자리 수(명): ('10.3) 242→(6) 200→(9) 191→(12) 124→('11.3) 121

* 빈 일자리: 현재 비어있을 뿐 아니라 1개월 내 채용이 가능한 일자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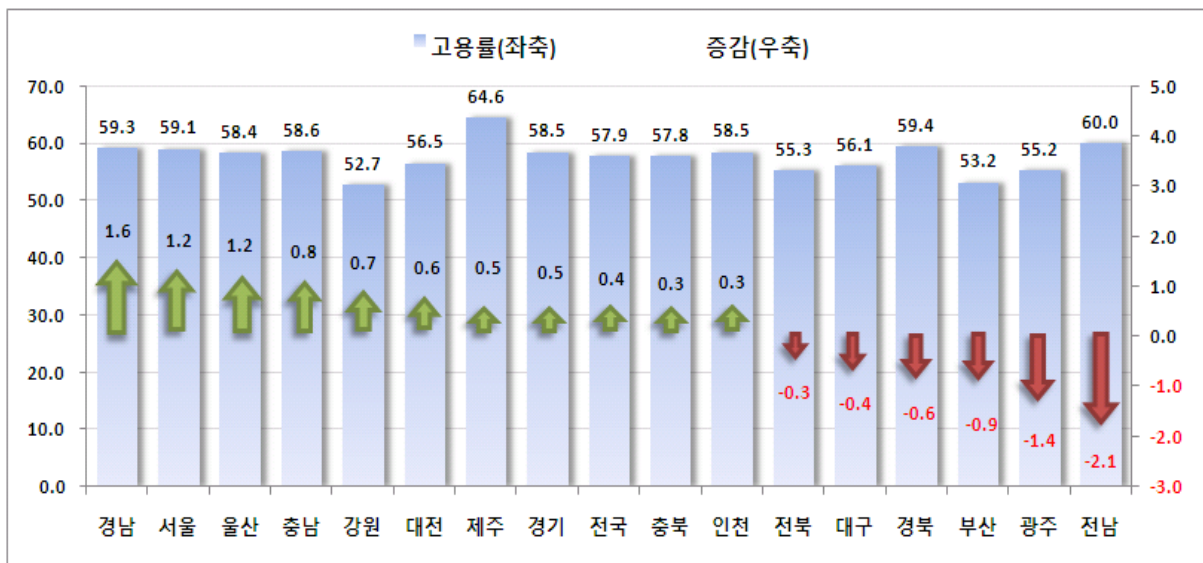
□ 전체적인 고용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, 지역별 고용상황은 상이

○ 16개 시도 중 고용률('11년 1~4월 기준)이 전년동기보다 개선된 지역은 경남(1.6%p), 울산(1.2%p), 서울(1.2%p) 등 10개 시도

* 최근 제조업 업황 개선에 따라 주력산업이 제조업인 지역(울산, 경남 등)의 고용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

- 악화된 지역도 전남(-2.1%p), 광주(-1.4%p), 부산(-0.9%p) 등 6개 시도

< '11.1~4월 지역별 고용률(% , %p, 전년동월대비) >

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< 향후 전망 및 대응 >

◇ 민간 중심의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어, 5월 이후에도 고용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

- 다만, 유가·물가, 일본원전사태 등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작년의 기저효과로 5월 이후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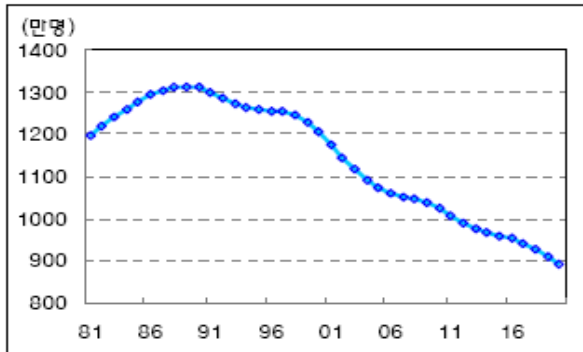
◇ 앞으로도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필요

- 특히, 전반적 고용사정 개선에도 체감 사정이 어려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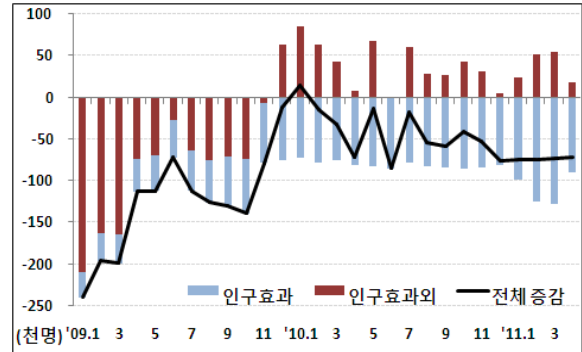
❖ 청년층 고용률 동향(세부 연령별)

- '11.4월 청년 고용률은 39.9%로 전년동월대비 0.3%p 하락
- 취업자는 3,83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천명 감소하였으나 이는 주로 인구 감소에 의한 영향

【청년층 인구 추이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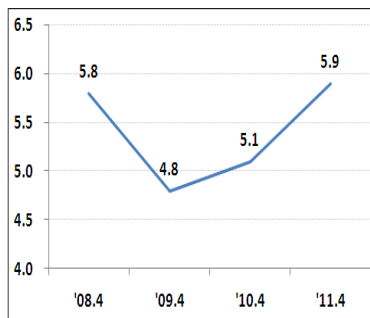


【청년층 취업자 증감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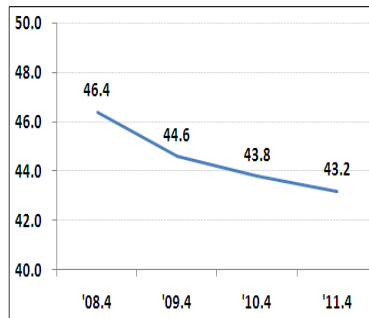


- 10대 및 20대 후반 고용률은 3년 연속 증가하며, 위기 이전 수준 회복
- 재학인구의 비중이 높은 20대 초반의 고용률은 43.2%로 전년동월 대비 0.6%p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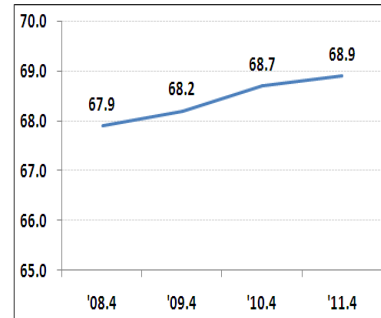
【15~19세 고용률】



【20~24세 고용률】



【25~29세 고용률】



< 청년층의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(만명, %) >

	'11.4월 고용률	'11.4월 인구	전년동월대비	
			인구증감	취업자 증감
<15~29세>	39.9	961.6	△11.1	△7.4
15~19세	5.9	335.2	2.1	2.7
20~24세	43.2	265.8	2.0	△0.6
25~29세	68.9	360.5	△15.1	△9.5

II. 노사관계 동향 및 전망

◇ 노조법 재개정을 둘러싼 중앙단위 노사·노정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으나, 현장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 유지

□ ‘법과 원칙’, ‘노사갈등 자율 해결’, ‘상생협력’의 기조를 견지한 결과, 금년도 현장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 유지

○ 노사분규는 10건이 발생(5.12), 전년 동기(11건) 대비 소폭 감소

○ 협약임금 인상률은 5.0%(5.12)로 전년 동기(4.1%) 대비 0.9%p 상승

○ 근로시간면제제도는 4월말 현재 제도 시행('10.7.1) 이후 가장 높은 도입율(87.4%)을 기록하는 등 순조롭게 정착

□ 다만,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요구, 임금교섭 본격화 등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요인 상존

○ (노조법 재개정)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정치 및 현장 투쟁을 병행하며 정부 압박

* 양노총과 야3당은 전임자 급여 노사자율, 복수노조 자율교섭 등 5개항에 대해 공동입법 발의 하기로 합의(4.29 기자회견)

○ (임금교섭) 5~6월 임단협 교섭이 본격화되면 물가상승 등에 따른 임금인상 압력과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등이 맞물려 갈등 증가 예상

< 대응방향 >

◇ 현행 노조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, 불법투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

◇ 복수노조, 임금인상 등 현장 노사관계 불안 요소에 적극 대처

* 복수노조: 조기 연착륙을 위해 노사교육 및 법 준수 지도 / 임금인상: 생산적 교섭 확산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임금결정 지원

【 안건 2 】

일자리 현장 애로 및 지원방안

- 「일자리 현장 활동」 추진상황 -

순 서

I . 추진배경 및 경위	13
II . 그 간의 추진상황	14
III .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	16
IV . 향후계획	20
V . 토의과제	21
1. 공단지역 교통불편 해소	21
2.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	25
3. 시간제 일자리 창출	28

I 추진배경 및 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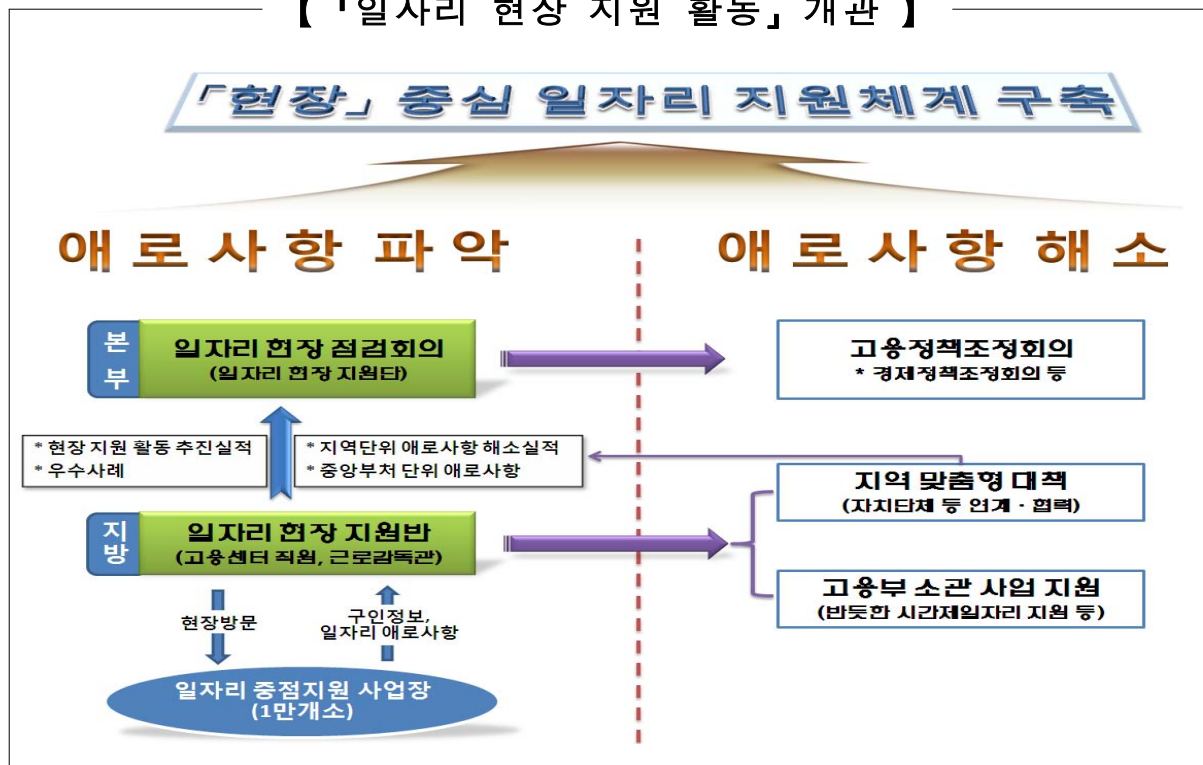
□ 추진 배경

- 유가 급등, 일본 대지진 등 외부변수에 의한 일자리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국민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「현장 중심의 맞춤형 대책」 추진

□ 주요 경위

- 관계부처 논의 및 의견수렴 (3월 중순)
 - ▲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(3.16) ▲ 고용정책조정회의 논의(3.18)
- 지방관서 의견 수렴 및 대국민 홍보 (3월 중순 ~ 4월 중순)
 - ▲ 중앙과 지역 일간지,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
- 현장 활동 착수 (4.11 ~)
 - ▲ 기간·대상: 4.11 ~ 6.30 기간 중 고용부 전직원이 「일자리 중점지원 사업장」 1만개소 방문
 - ▲ 주요내용: 기업의 채용정보와 일자리 애로사항 등을 파악·지원

【 「일자리 현장 지원 활동」 개관 】



II 그 간의 추진상황(5월 17일 기준)

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4,490개 사업장 방문(진도율 44.9%)

□ 구인정보

- 채용계획이 있거나 구인난을 겪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인정보를 파악하고 채용을 지원
 - * 1,097개 업체에서 5,673명 채용정보 발굴 → 이 중 504명 채용
- ⇒ 조속한 채용지원을 위해 「지역대학·고교·훈련기관」 등과 연계·협력 중. 다만, 중소기업은 구조적 인력수급 불일치로 어려움이 예상

□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

- 고용부 외에도 범 부처, 자치단체 소관의 기업 애로사항 파악·해소 방안 모색 중
 - * 고용노동부(38개 유형 1,934건), 관계부처(24개 유형 374건), 자치단체(6개 유형 253건)
- ⇒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·협의 중

< 진행 상황 >

① 중앙부처 소관

- (관계부처) 유사·공통사항을 통합한 애로사항 총 47건 발굴, 소관부처와 협의 중
- ⇒ 5.13.현재 47건 회신(수용 4, 기시행 13, 부분수용 7, 수용불가 23)
- (고용부) 유사·공통사항을 통합한 애로사항 총 209건 발굴
- ⇒ 검토결과 수용(기 시행, 부분수용 포함)이 51.7%(108개), 수용불가(74개, 35.4%), 장기검토(27개, 12.9%) 의견

② 자치단체 소관

- 6개 유형 총 253건 파악 (공단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교통불편으로 인한 구인애로가 50.6% 차지)
- ⇒ 지방고용노동청과 자치단체간 해소방안 협의 중

< 일자리 현장활동 및 애로 해소사례 >

<기업 애로해소 사례>

- ❖ (주)○○○○는 부천 원미구 소재 사업장으로 오정구에 구직자 풀이 많은데 연결 버스노선이 없어 인력 채용 어려움에 직면
⇒ 부천고용노동지청과 부천시청간 협의 통해 연계버스 노선 신설키로 결정(11년 하반기 또는 12년 상반기 중)
- ❖ 인천소재 ○○금속에 출입 차량이 많은데 회사앞 도로에서 좌회전이 금지되어 불법 좌회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노출
⇒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과 인천 서부경찰서가 합동으로 실태조사 실시, 인천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상정(5.24 예정)
- ❖ 서울 ○○구 소재 (주)○○○○는 구내식당을 증축하고자 하나 난개발을 이유로 불허, 이로 인해 5개조로 나누어 식사
⇒ 관악고용노동지청이 ○○구청과 협의하여 대안으로 옥상에 가설 건축물 설치하는 가능한 것으로 조치(5월 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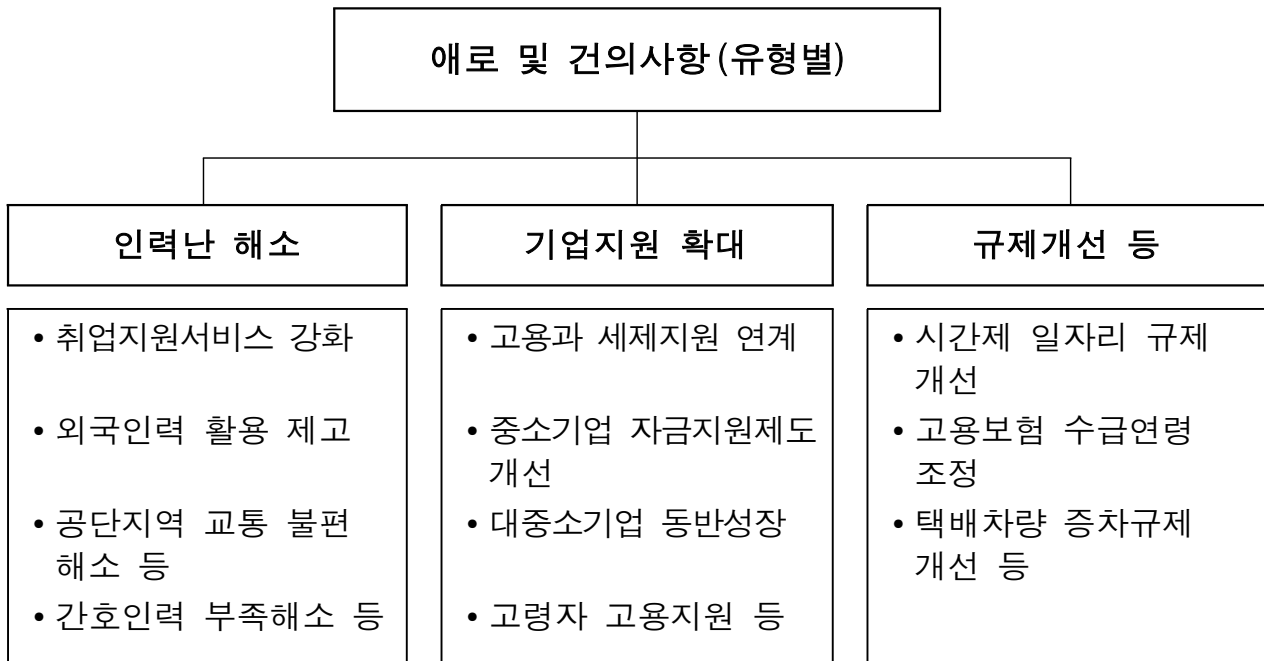
<취업지원 사례>

- ❖ 천안고용노동지청은 대전지방교정청과 공동으로 「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·구직 만남의 날」 개최(5.4)
⇒ 상시 인력난 겪는 9개 기업과 고용부 「취업성공패키지」 참여 출소 예정자 19명 면접 통해 출소 후 12명 채용 예정 확정
- ❖ 대구 달성공단은 시내와 멀리 떨어져 구인구직에 애로
⇒ 주 1회 순회출장 고용센터 운영(5월 26일부터)

<제도개선 사례>

- ❖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 중 임금감액 조건(피크임금 대비 20% 이상) 완화
⇒ 지원요건 중 임금감액 규모를 중소기업에 한해 하향 조정(12년 시행)
- ❖ 고용허가 업무와 출입국 관리업무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
⇒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절차 일원화 서비스 제공(12년 상반기)

III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



1. 인력난 관련 애로사항

□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

현장에서는...

- 고용센터, 자치단체 일자리센터의 취업알선은 취업의사가 없는 자의 알선 등 효율성, 신속성, 적중성이 낮다.
- 워크넷에서 찾을 수 있는 구직자가 다양하지가 않아 적절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.

○ 공공취업알선기관의 취업알선이 다양하지 못한 인력풀 등으로 적정 인재를 적기에 알선하지 못해 구인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

⇒ 취업알선 내실화 방안, 민간 취업포탈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정보 종합 제공방안 마련 중(고용부)

- ▲ 민간취업포털(잡코리아, 커리어, 사람인 등 3개사)과 워크넷의 연계로 구인정보 통합 제공('11.7.1.~)
- ▲ 알선전 구직자의 취업의사를 재확인하고 워크넷의 구인·구직 DB를 수시로 확인하여 유효정보 유지 등
- ▲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한 별도의 구인·구직정보망 구축 검토

□ 외국인력 활용 제고

현장에서는...

- 내국인 기피 3D업종으로 외국인 쿼터가 적어 필요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.
- 물류서비스업은 일이 힘들어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데 외국인 쿼터가 없다.
- 고용허가와 출입국관리 업무가 고용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되어 업무부담이 가중된다.

○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사용확대(쿼터 증원, 허용업종 확대 등), 외국인 관리업무(고용부, 법무부) 일원화 등 건의

⇒ 인력부족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, 법무부와 고용부간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방안 마련 중(고용부·법무부)

▲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절차 일원화('12년 상반기 중)

□ 공단지역 교통불편 해소 등

현장에서는...

- 공단지역 교통불편으로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인력 채용이 어렵다.
- 산업단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식수문제를 겪고 있다.

○ 지방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교통불편에 따른 인력확보 어려움 해소와 상수도 공급 등 건의

⇒ 토론평론 1 참조 (p21)

□ 간호인력 부족 해소

현장에서는...

- 간호사 당 병상 수에 따라 병원등급을 평가함에 따라 대형병원 위주로 간호사가 편중되어,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인력이 부족하다.

○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인력 부족 해소

⇒ 간호인력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 또는 추진예정(복지부·고용부)

- ▲ 간호인력 공급확대 (대학 입학정원 단계적 증원, 학사편입 확대 등)
- ▲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 검토(12월에 방안 도출 예정)
- ▲ 「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사업」 추진 중 (고용부, 4월)

2. 기업지원 관련 애로사항

□ 고용과 세제간의 연계

현장에서는...

- 근로자 수 5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 종업원할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는데, 인력채용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불합리하다.
- 고용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에 세무조사 면제나 법인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.

○ 고용창출이 불리한 지방세제 개선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 미흡 지적

⇒ 토론과제 2 참조 (p25)

□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 개선

현장에서는...

- 신용보증, 기술보증 요건이 시중은행 수준으로 엄격하고, 미래성장성 보다 과거실적 위주로 평가한다.
- 중소기업 지원 이자율이 시중금리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.

○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대출 및 보증요건 완화, 이자율 수준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 제기

⇒ 중소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원제도의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검토 필요(중기청)

□ 대중소기업 동반성장

현장에서는...

- 최근 대기업이 금형산업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이 어렵게 양성해 온 우수 인력을 스카우트 해가고 있어,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.
- 납품 대금을 대부분 3개월짜리 어음으로 받고 있다. 자금필요시 할인받아 사용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다.
- 두부제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면서 대기업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○ 대기업의 인력 스카우트 방지, 납품대금의 어음결제 방식 개선, 중소기업 적합업종·품목 지정 등을 건의

⇒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협조 요청(지경부·공정위 등)

□ 고령자 고용지원

현장에서는...

- 정년 있는 사업장은 정년 연장지원금 등의 지원제도가 있으나, 정년 없는 사업장은 지원금 제도가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.

○ 정년제도 유무에 따른 지원금 제도 차별에 대한 불합리 지적

⇒ 정년 없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여부 검토 중(고용부)

3. 규제완화 등 애로사항

□ 시간제 일자리 규제 개선

현장에서는...

- 파트타임 간호사 수는 의료수가등급 적용시 반영되지 않아 파트타임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는다.
-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시 8시간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지원금을 받는다.

○ 간호등급제 적용과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시간제 근로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

⇒ 시간제 근로자도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간호등급 인정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방안 모색(복지부) (토론과제 3 참조, p28)

□ 고용보험 수급연령 조정

현장에서는...

-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 실업급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.

○ 고령화 사회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맞춰 실업급여 수급연령 조정 필요성 제기

⇒ 수급자격 연령 조정 방안 검토 예정(고용부)

□ 택배차량 증차규제 완화

현장에서는...

- '04년 이후 택배 물량은 급증했으나 택배차량 증차를 불허해 운송지연, 택배 서비스 질 저하, 불법 자가용 차량 운행 등이 벌어지고 있다.

○ 물류업계는 택배물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, 화물자동차 공급 제한에 따른 차량부족으로 물량처리에 어려움을 호소

⇒ 관계부처 통보 및 협의 예정(국토부)

IV 향후 계획

□ 6월말까지 현장지원 활동을 추진하고, 발굴된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의, 개선방안 모색

* 지역단위 과제는 시장, 도지사가 위원장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상정

□ 최종 결과는 국무회의 또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(7월)

V 토의 과제

1. 공단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

현장에서는...

- 출퇴근 등 교통난으로 구인에 애로 (대구 달성공단)
- 대중교통이 없어서 입사지원을 기피 (익산)
- 버스노선은 있으나, 하루 5번만 운영되어 불편 (경기)
- 중소기업은 자체 통근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 (전주)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다수
 -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253건 애로사항 중 교통 불편관련 문제가 128건으로 전체의 50.6% (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 공통)
- 산업단지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개선이 필수

- ① 대중교통 신설
- ② 출퇴근 시간에 한하여 버스노선을 연장하거나 배차주기를 단축
- ③ 출퇴근 시간대에 마을버스를 운영 (마을버스가 대중교통노선이 끝나는 지점부터 산업단지까지 연결)

- 대중교통 개선이 어려운 곳은 기숙사 신축, 통근버스 운영 등을 통해 해소 필요

- ① 기 조성된 산업단지의 노후시설(공동 기숙사, 도로 등) 개선
- ② 사업체가 단독(또는 공동)으로 기숙사나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
- ③ 공단 관리사무소가 통근버스를 운영(전세버스 등)하도록 지원

□ 토의사항(협조사항)

- **(자치단체)** 우선 일자리 현장에서 제기된 128건의 지역별 교통문제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 후 해결방안 마련 필요(차기회의 논의)
 - 추후, 시·도가 총괄해서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후 지원방안 마련 (11년 하반기)
 - 산업단지 조성단계부터 교통계획이 포함되도록 조치 필요
- **(국토부)**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, 관리공단 등이 전세버스차량을 이용하여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중
 - * 현재 통근버스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으로 소속 구성원의 통근목적으로만 운행 가능
 - 산업단지 노선버스 운행실태 조사('11.3월~6월)를 거쳐 자치단체 및 버스업계(노선·전세) 등과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 추진('12.上)
- **(지경부·농림부·자치단체)** 산업단지·농공단지에 개보수 예산을 활용하여 도로개선, 공동기숙사 등을 지원 필요
 - 관리책임이 있는 소관 자치단체도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 필요

< 산업단지 유형(산업입지법 제2조) >

구분	분양대상 (천㎡)	분양면적 (천㎡)	분양률 (%)	관리권자	11년 개보수 예산	비고
국가단지	233,034	231,836	99.5	지식경제부	150억원	QWL 벨리 시범지원 4곳
일 반 산업단지	133,967	133,967	92.6	시·도지사	-	
도시첨단 산업단지	81	81	100	시·도지사	-	
농공단지	45,777	44,218	97.2	시·군·구청장	약 74억원	신설

- **(고용부)** 「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」*을 통해 사업주 단독(또는 공동)으로 통근차량 구입, 기숙사 설치 등을 지원
 - * 시설투자비 50%(5천만원 한도)와 증가근로자 1인당 120만원(최대 30명)을 합산한 금액 지원 ('11년 예산 124억원) → 12년 예산 확대 추진
 - 「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」* 통해 통근차량 운영 지원
 - * 자치단체가 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취업알선, 맞춤훈련 등을 연계하여 통근차량 운영을 포함하여 사업제안 시 지원가능('11년 잔여예산 23억원) (5월말까지 신청)



현장의 교통불편 해소 목소리(시도별)

자치단체	현장에서는....
부산	⊗ 녹산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까지 오는 버스가 부족하여 교통이 매우 불편하여 구직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음(마을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 2대가 전부임)
대구	⊗ 칠곡군 관내 사업장은 대구·구미시 거주자들이 많은데 비하여 사업장은 외곽지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·퇴근 불편
인천	⊗ 신연수역에서 회사까지 도보로 20분, 버스 750번 한 대만 운영되어 접근성이 낮아 근로자 출퇴근이 어렵고 구직자들도 취업을 기피
	⊗ 청라산업단지에는 현재 1개의 노선버스(41-1)만 운영되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짐
광주	⊗ 평동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직원 채용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
울산	⊗ 달천농공단지까지 오는 버스노선이 없어 농공단지 근로자의 출퇴근이 불편하고 구직자들이 취업을 꺼림
경기 (가평군)	⊗ 마석 및 구리지역에서 출·퇴근하는 인력이 많으나 대중교통 불편으로 출·퇴근시 이용에 불편(시의버스로 '청평터미널' 도착 → '현리터미널'까지 시내버스 이용 → '현리터미널'에서 마을버스 이용해 출근중) * '청평터미널'에서 '현리터미널'까지 가는 버스가 30분에 한 대, '현리터미널'에서 마을버스는 8시가 막차라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사업장 특성상 퇴근 시 활용이 어려움
경기 (김포시)	⊗ 김포시 월곶면 소재 사업장으로 사업장 시설 및 근로조건은 양호한 편이나 사업장으로 바로 오는 교통편이 없고,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이어서 출퇴근문제로 구인에 어려움이 있음 ⊗ 김포시 월곶면 소재 사업장으로 최근 6개월간 15명이 퇴사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고 이직자들의 주된 퇴사사유가 교통 불편임
경기 (수원시)	⊗ 수원산업단지는 110여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, 향후 2013년까지 3,4단지 조성완료 계획중이므로, 현재보다 많은 인력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 - 그럼에도 불구하고, 현재 단지 근처로 진입하는 대중교통편이 2개 노선(720-2번, 52번 버스), 배차간격 30~40분 간격으로 대중교통이 열악 * 회사는 직원을 유치하고, 기존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,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비용지불도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스러움

자치단체	현장에서는....
경기 (용인시)	⊙ 포곡읍 금어리는 30여개사 500여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이 열악 * 용인시내에서 금어리로 오는 마을버스가 40분 간격으로 있음 이로 인해 취업근로자 대부분이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, 취업희망자는 교통불편의 사유로 취업을 꺼리고 있음
경기 (화성시)	⊙ 사업장을 지나는 버스노선이 적고(111-2) 그나마 하루 5번밖에 운행하지 않음 *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때문에 근로자 대다수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, 신규직원 채용시에도 어려움이 발생
경기 (화성시)	⊙ 사업장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편이 한 대밖에 없음. 어렵게 내국인 근로자와 연락해 면접을 보아도 교통편이 좋지 않아 입사를 원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없는 실정 - 면접시에 근로자들은 (1)통근버스를 운행하는지 여부 (2)통근 버스가 없을 경우 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둘다 없을 경우 입사를 거부함
강원	⊙ 원주 공단내 출퇴근시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직원채용이 어려움
충북	⊙ 가장 봄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에서 목행·용탄 농공단지 방향으로 운행되는 시내버스가 없어 자가용 없이는 출퇴근 불가
충남 (부여군)	⊙ 근로자 중 자차로 70%, 버스로 30%가 출퇴근중이고 버스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버스노선이 은산농공단지까지 들어오지 않아 은산면내에서 하차하여 1km(15분)정도 걸어 들어와야 함
전북	⊙ 군산 공단내 시내버스가 많지 않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음 ⊙ 완주군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구직자의 취업기피 현상으로 인력수급 애로 ⊙ 익산공단내 버스노선이 별로 없어 입사지원을 기피하는 등 인력 채용 애로
전남	⊙ 대불산업단지내 운행노선이 제한적이어서 인력 채용시 어려움
경북	⊙ 구미산업단지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(버스가 1일 2번만 다님) - 통근버스를 운영할 여력이 있는 회사만 그나마 인력확보 가능
경남	⊙ 김해지역은 공단이 여러 곳으로 산재해 있고 대중교통 수단이 빈약하여 출퇴근이 힘든 이유로 인력난을 겪고 있음

2.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

현장에서는...

- 근로자 수가 50인을 초과했다고 해서 종업원할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(전주지역 중소제조업체)
- 고용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
- 대출이자 등과 관련한 기업 평가 시 고용관련지표 우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(지방세) 종업원분 지방소득세*가 수익에 관계없이 종업원 수(50인초과)에 따라 부과됨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고용 시 오히려 세 부담 증가
 - * 종업원 급여총액의 0.5%를 사업주에게 부과, '09년도 징수액 6,853억원(시군구세)으로 09년 지방세수의 1.8%
- (국세)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제도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고 있으나,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낮은 수준

< 주요 고용친화적 세제운영현황 >

조문명	주요내용
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<'10년 시행, '11.12.31 일몰>	기업 투자금액의 1%한도 내에서 고용이 추가로 1명씩 늘어날 때마다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1000만원(청년층은 1500만원)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(단 2년 이상 고용)
고용증대세액공제 <'10년 시행, '11.6.30 일몰>	중소기업이 2010년 3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근로자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
- (금융 등) 고용부가 '10년부터 고용창출 100대기업을 선정하여 발표·포상하고 있으나,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없는 상황
 - * 1년간 고용증가율(50%), 창출된 일자리 수(50%)를 기준으로 선정 (중소기업 31개, 중견기업 34개, 대기업 35개)

□ 토의사항 (협조사항)

- ◆ 일자리가 중요한 만큼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기업을 포상해야 한다.
(대통령 말씀. '10.9.20)
- ◆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기업을 평가 1순위로 본다.
(대통령 말씀. '10.10.14)

○ (행정안전부) 사업주가 추가 고용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50인 이상 사업체에 부과하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합리적 개선 검토

- 인당 부과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체의 고용창출 노력 유도 필요

< 행정안전부 의견 >

- 50인 이하는 면제하고 있고,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어 폐지는 곤란
- 면세점 기준을 현행 종업원수에서 다른 합리적 기준(예: 매출액 등)으로 전환가능한지에 대하여 연구용역 등을 실시, 중장기적으로 검토

○ (기획재정부)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더 많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개편 시 반영

- 서비스업, 중소기업 등도 세금감면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

○ (고용노동부) 2011년 고용창출 100대기업을 선정하여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우대조치 방안 추진

* 인센티브 제공방안 협의(6월) → 우수기업 선정(12월초)

< 관계부처 협조 추진 사항 >

부처명	우대조치 내용
고용부	○일자리 유공 정부포상 선발 시 가점,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
국방부	○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 시 우대 등
중기청	○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우대,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
금융위원회	○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,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
자치단체	○지방세 감면 등
은행	○대출금리 우대

■ 토의 참고 ■

고용친화적 재정·산업 정책 (국가고용전략 '10.10.12)

□ 주요 내용

- (예산) 예산편성·집행 과정에 고용창출 효과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('고용영향평가제도'와 연계)
- (조세) 조세제도를 노동수요와 근로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개선
- (조달) 조달계약 시 고용창출실적이 높은 사업체를 우대하고 정부발주 사업 추진 시 적정임금 수준의 공사원가 반영검토
- (산업) 정책 입안단계부터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하고, 필요한 인력규모 및 양성방법 등에 대한 계획 반영 추진
- (금융) 여신·보증 심사 시 고용효과가 큰 기업·산업을 우대

□ 주요 추진 상황 (2011. 5월 현재)

- 고용친화적 정책추진 및 재정운용 지원을 위한 고용영향평가 본격 시행
 - * 생태하천복원사업,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, 사회적기업 육성,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, 농식품수출확대 지원정책 등 상반기 총 11개 과제 선정('11.5.11)
- 2011년 세제개편안 관련하여 일몰이 도래되는 고용친화적 조세제도 연장 필요성 등 검토(5월말)
- 물품구매 적격성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해 우대
 - * 신인도 평가 기준 규모별 차등화 및 배점한도 3점으로 상향('10.9월)
-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여 당초 계획 대비 초과실적 달성
 - * (신보) 당초 1분기 공급계획 11,250억원 대비 5,176억원 초과 공급(146%)
 - (기보) 당초 1분기 공급계획 4,000억원 대비 1,379억원 초과 공급(134.5%)

3. 시간제 일자리 창출

현장에서는...

- 시간제근로 간호사 수는 의료수가등급 적용시 반영되지 않아 파트타임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는다.
-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금은 8시간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.

□ 현황 및 문제점

<1> 병원 분야

- 임시직(기간제 및 시간제근로를 포함한 개념) 근로자 채용시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보다 건강보험수가 간호등급 산정*에 불이익

* 현행 제도는 근무 간호사수가 많을수록 높은 간호등급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기금으로부터 더 많은 간호관리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

- 상용직 시간제 간호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직으로 보아 근무시간 등에 비례한 보험수가 산정이 인정되지 않아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현실

< 간호등급 산정기준(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에 관한 고시) >

구 분	산정 기준	문제점
서울소재 종합병원	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3인을 2인으로 산정	○ 주당 4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명시 규정 없음 - 상용직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해도 간호등급 가산 불인정
지방 종합 병원 및 일반병원	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 근로시간이 - 20~30시간인 경우 0.4인 - 30~40시간은 0.6인 - 40시간 이상은 0.8인으로 산정	○ 근로시간에 비례한 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음 - (예) 주당 20시간인 시간제근로자 2인을 채용할 경우 0.8인만 인정 (주당 40시간 정규직은 1인 인정)

<2> 보육 분야

- (정규보육) 복지부 지침상 1일 12시간 운영(07:30~19:30) 원칙인 반면,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1인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지원

- 대부분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시간제근로자 등을 추가 채용하기 보다는 재직 근로자의 연장근로(당번제)를 통해 부족한 인력 충당

* 재직 근로자 연장근로시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 빈발

- (시간연장 보육) 시간연장 보육(17:30~24:00)의 경우에도 전일제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채용하거나 기존 교사의 연장근로를 선호
 - * 전일제(8시간) 시간연장보육교사 채용을 통해 부족한 주간보육 인력을 충당
- 시간연장 보육의 경우 단시간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지급됨에도 시간제 보육교사 채용 실적은 매우 저조
 - * 시간연장 보육사업 현황('10년) ⇒ 전일제 보육교사 4,800여 명 중 시간제 보육교사 채용은 25명

□ 토의사항(협조사항)

<1> 병원 분야 (복지부)

- 상용직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임시직 시간제 간호사와 달리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간호등급에 산정되도록 조치
 - * '11년부터 상용형 시간제 근로 활성화를 위해 상용직 근로자 채용시 월 40만원, 1년간 지원 중(고용부)

<2> 보육 분야 (복지부·자치단체)

- 기존 근로자의 연장근로보다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운영 시스템 개선(장시간 근로는 줄이고, 일자리는 늘리는 효과)
 - 특히, “시간연장 보육사업” 운영시 가능한 한 시간제 보육교사를 채용하도록 지도 및 홍보
- '11년부터 공공보육시설 시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
 - ▲ 시간제 보육교사도 인건비 지원방안 시행 검토 (2012부터)
 - * 고용부는 2011년도 상반기 중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원계획
 - ▲ 연내 지침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경력을 시간단위로 합산허용 예정 (현재는 주 30시간 이상만 인정) 1)
-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 협조

1) 어린이집 근무경력 :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에 필요

< 토의 참고 >

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

□ 추진 배경

- 최근 노동시장 내 시간제근로자가 증가 추세이며, 시간제근로에 대한 수요도 상당 수준 존재
 - '08년 이후 시간제근로자가 매년 약 20만명씩 증가 추세
 - * 시간제근로자 추이(천명): 1,201('07) → 1,229('08) → 1,426('09) → 1,620('10)
 - * 성별로는 남성 26.3%, 여성 73.7% ('10.8, 경찰부가조사)
 -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17%(2,811천명)는 주30시간 이하의 시간제일자리 취업을 희망('10.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)
 - * 시간제근로자 중 스스로 시간제근로를 선택한 비율은 39.5%(640천명, '10.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)
- 그러나, 대부분 임시·일용직(94.9%)으로 일자리의 질이 낮아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
 - * 시간당임금: 시간제근로자(6,758원)는 통상근로자(10,646원)의 63.5%
 - * 종사상 지위: 일용근로자 36.7%, 임시근로자 58.2%, 상용근로자 5.1% ('10.8, 경찰부가조사)
-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, 고용률 제고 등 경제의 잠재성장력 유지 도모
⇒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

□ 주요 추진 상황 (2011. 5월 현재)

<1> 시간제일자리 지원제도 도입

- 새로운 직무개발, 장시간 직무의 분할 등을 통하여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컨설팅 및 인건비 지원(61억원)
 - * '10년: 지원 대상 50개소 중 24개소에서 432명 채용
 - * '11년: 3차 신청 사업장 수 134개소, 1·2차 37개소 선정(1차 18개소, 2차 19개소)

<2> 선도기업 발굴·확산

- 시간제근로 수요가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선도기업을 발굴, 지원을 통해 Best-Practice 도출 → 성과를 전체 노동시장으로 확산

* 업종별 선도기업 10개사 발굴(병원 1, 유통 2, 제조 4, 서비스 3)

<3> 제도적 기반 마련

- 시간제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조정
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및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고용보험법」 등 4개 법령 개정 추진('11.4.21 관계부처 협조요청)
- 주민편의서비스 기관에서 야간·주말 연장 운영을 통하여 시간제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종별 제약요인 제도개선 추진
 - * 병원(간호등급산정기준 개선 등), 보육시설(시간제보육교사 경력인정 및 인건비 지급방식 개선) 등
- (가칭) 「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
 - * 주요 내용: 근로조건 비례보호, 차별금지, 근로시간 보호, 통상근로-시간제 근로간 전환통로 마련, 사업주 지원 근거 마련 등

□ 협조사항 (전부처·자치단체)

-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Best Practice 도출함으로써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노력
 - * 공공기관의 정원산정 방식을 인원수 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('11.1월, 기재부 지침. 【예】 정원100명(인원수) → 전일제 90명 + 시간제 20명(4시간/일)
 - 정부 및 자치단체간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모범사례 발굴·보급
-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저해하는 각종 애로사항 및 제도적 장애요인 등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 노력 협조
 -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